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6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김용태·정성국·강선영

김대식 • 한기호 • 김 건

박정하 • 서천호 • 이종배

송석준 • 조은희 • 유용원

서지영 • 백종헌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 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

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 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

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 도·감독기관의 장
 -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
-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 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 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를 "연구·자문 등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복합시설 설치 · 운영 ·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 2.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관리 지원
 -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u>「초·중등교육</u>	1 <u>다음 각 호의 어</u>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한다.	
<u> <신 설></u>	<u>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u>
	호에 따른 유치원
<u><신 설></u>	나.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u><신 설></u>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
	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
	<u> </u>
<u><신 설></u>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
	<u>다.</u>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
	<u>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u>
	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ᅟ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 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 지 아니하다.

- 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 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 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 교: 총장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 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의 이사장
- 3.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 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 여 정하는 시설----.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 2. <u>감독기관의 장</u>이 학교복합시 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 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감독기</u>

]	· <u><삭 제></u>
<u> </u> <u>]</u>]	<u><삭 제></u>
<u>-</u>	<u><삭 제></u>
<u>}</u>	<u><삭 제></u>
)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u>}</u>	
2	
	<u>.</u>
<u>-</u>	1. <u>감독기관장등</u>
- }	
<u>}</u> }	
<u>-</u>]	
'	
]	2. <u>감독기관장등</u>
}	
]	②감독기

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감독</u>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 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

관장등
③
<u>감독</u>
<u>기관장등</u>
,
4
<u>감</u>
<u>독기관장등</u>
,
5
이 법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른다.

⑥ (생략) <신 설>

따른 학교에 설치하는 경우 「학교시설<u>사업 촉진법」</u>-----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 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 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 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 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 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

리	원칙)	1	학교	2복합	나 시설	은
제53	조에	따라	학교	고복합	나 시설	을
설치	한 ス	가 은	은영·	관리	하여	야
한디	. 다	만, 학	·생 및	포는	지역	주
민의	주된	1 사용	용 공	간, 여	이용	빈
도	및 이	용 시	간 -	등을	고려	하
여	지방지	가치단	체의	장회	과 <u>김</u>	-독
<u>기관</u>	-의 장	아 할	를 의 히	-िव्य	달리	정
할 -	수 있다	구 .				

- ② 학교복합시설을 <u>운영·관리</u> <u>하는 자</u>는 학생, 학부모, 교직 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 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③ <u>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u>
 <u>하는 자</u>는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
 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ਠੁੱ	교복	합시설]을	운영		관리
하늯	=	자는	해당	학.	교의	亚	육활

리 원칙) ①
감독기관
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u>을 운영·관리하는 자를</u>
② <u>운영·관리</u>
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
③ 운영관리자
④ 운영관리자

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 또는 과 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 법」,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 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 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 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 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 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현 략)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전문기관) ①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과 같음)

(2)	<u>운영관리</u>	<u>가</u>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 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 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 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신 설>

 - <u>연구·자문</u>	등의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 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 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

 런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 정 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 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 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u>감독기관의 장(교육부</u>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수 있다.

<신 설>

(4)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_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	<u>}_</u>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u>
1	<u>구.</u>	
제]	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_
-		_
-		_
-		_
-	<u>감독기관장등</u>	_
-		_
-	·	
제]	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	<u>}</u> -
_	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히	<u>}</u>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u>
(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
2	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u>
]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	<u> </u>
ļ	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

원할 수 있다.